



[ : 2012.5.1] 2 2

- 3 ( ) 8 1 (
- " " ) . < 2010.2.24, 2010.7.12 >
1. 40 5
  2. 14 3 4
  3. 98
  4. 「 」 4 1 . 8
  5. ( " " ) .

[ 2010.2.24]

[ : 2012.5.1] 3

- 4 ( ) . <
- 2010.2.24, 2010.7.12 >
1. 5
  2. 가 5
  3. 5
  - 가.
  - . 1
  - . ( 「 」 2 )
  - 3

[ : 2012.5.1] 4

- 5 ( ) 3 , , 4 3 가
- . < 2010.2.24 >

[ : 2012.5.1] 5

- 6 ( ) 1 . 가 . <
- 2010.7.12 >

[ : 2012.5.1] 6

- 7 ( ) 가 가 . <
- 2010.7.12 >

[ : 2012.5.1] 7

- 8 ( ) 8 3 ,
- . < 2010.2.24 >



[ : 2012.5.1] 10

11 ( )

[ : 2012.5.1] 11

12 ( . )

9 2

「 . 」 8

. <

2010.7.12>

[ : 2012.5.1] 12

2

13 <2010.3.26>

[ : 2012.5.1] 13

14 ( ) 10

( " " ) 25 1

. < 2010.3.26, 2010.7.12>

25 1

1

. <

2010.7.12>

1 2

. < 2010.7.12>

[ : 2012.5.1] 14

15 ( ) 25 2

. < 2010.7.12>

1. ( )

2.

[ : 2012.5.1] 15

16 ( )

. < 2010.7.12>

1.

2.

3.

4.

[ : 2012.5.1] 16

17 ( ) 27 1

. < 2010.7.12>

1.

2. (借入處)

- 3.
- 4.
- 5.
- 6.

27 2

(移入充當)

.<

[2010.7.12>](#)

[ : 2012.5.1] 17

18 ( ) 29 1 (

" " ) 1 . 「 」

1 가 , 「 」

「 」

[ : 2012.5.1] 18

19 ( ) 29 2

1.

2. 1

1

[ : 2012.5.1] 19

20 ( ) 32 1

.< [2010.7.12>](#)

1.

2. 가 (價額)

3.

4.

[ : 2012.5.1] 20

3

1

21 ( , ) 36 2

.< [2010.11.15>](#)

1.

2. ( 57 5 )

3.

4. ( 62 4 )

5.

6.

7.

8.

9.

1

.< 2010.11.15>

[ : 2012.5.1] 21

22 ( ) 36 3 4 가  
2 .  
36 3

[ : 2012.5.1] 22

23 ( 가 ) 36 5 " 가  
" 1 ( )  
1 가  
( " " ) , 가  
1. 가 3  
2. , ,  
가

[ : 2012.5.1] 23

24 ( 가 ) 36 5 "  
" 1  
( " " ) .< 2010.7.12>  
1 1  
1 .

[ : 2012.5.1] 24

25 ( ) 36 6 "  
" 37 1 2 ( " " )  
( " " ) .  
. < 2010.11.15>  
1.  
2. 3 2 가 . , 4 , 5 7 , 8 가 . , 9 , 10 가 , 11 가 ,  
12 가 , 13 가 , 14 가 , 15 가 . , 16 가 , 17 가 , 18 , 19 가 .  
, 20 , 21 22  
3. . 가

36 6 " "

.< 2010.11.15>

1. 1 1 : 26 1

2. 1 2 3 : 「 」 3 2  
( " " ) . 가

1  
가

2

1.

2. 3 5

<2010.11.15>

36 6

가

1 2 3

(

가

)

2 2

1 2 3

2

1

.< 2010.11.15>

36 6

.< 2010.11.15>

[ : 2012.5.1] 25

26 ( . ) ) 36 7 ( " "

" )

( " "

7 1

6

30  
29

1

365( 2

366)

1

1 1 12 31

[ : 2012.5.1] 26

2

27 ( ) 가

37 1 1 가

1.

2.

3.

4.

가

37 1 1 가  
(私的)

가

가

37 1 1 가

[ : 2012.5.1] 27

28 ( ) 가

37 1 1

( " "

가

37 1

1

[ : 2012.5.1] 28

29 ( ) 가 가

37

1 1

1. 가 가

가

2.

[ : 2012.5.1] 29

30 ( ) ( " " ) 가 가

가 가( 가 ) 37 1 1

1. 가 가 가

2. 가 가

3. 가

4. 1 3 가 가

[ : 2012.5.1] 30

31 ( ) 가

37 1 1

[ : 2012.5.1] 31

32 ( ) 가 37 1 1

1.

2. ( )

[ : 2012.5.1] 32

33 ( 3 ) 3 가 가 가  
3 가 37 1 1

[ : 2012.5.1] 33

34 ( ) 가 「 」 44 1 5

37 1 2 가

1. 가



2. . ,

3. 가 .

37 1 2

1. 가

2.

1 2 ( ) 3 .

[ : 2012.5.1] 34

35 <2010.11.15>

[ : 2012.5.1] 35

36 ( ) 37 2 " "

1.

2.

3.

[ : 2012.5.1] 36

37 ( ) 39 1

1. . 가 . 가

가 3

2. 가 가 3

3. , , , 가 3

1 가 가

1 가 가 3

가 2

가 1 가 ( 3

)

39 1 가

15

39 2

6 30

[ : 2012.5.1] 37

3

38 ( ) 40 2 가

1. 43 1 ( " " )

2. ( )

가. 40 4 2 (義肢)

. 40 4 6

. 40 4 7

3. 가

1

가

40 4 7

[ : 2012.5.1] 38

39 ( ) 44 1

1 20

가

7

2

2

44 2

5

[ : 2012.5.1] 39

40 ( ) 47 1 ( " " )

1.

2.

3.

4.

5.

1

3

(

1

.

1

)

(

41

2

1

)

7

[ : 2012.5.1] 40

41 ( ) 47 2 42

43

47 2

"

"

- 1.
- 2. .
- 3. 48 1 (轉院)
- 4.
- 2

[ : 2012.5.1] 41

42 ( ) . ( . )

1 ( " " ) .

[ : 2012.5.1] 42

43 ( ) .

5

- 1. ( )
- 2. 48 1 4
- 3. 72
- 4. 118 4
- 5. . 가

[ : 2012.5.1] 43

44 ( ) 48 1 4 " "

[ : 2012.5.1] 44

45 ( 가 ) 32 49 가 .

[ : 2012.5.1] 45

46 ( 가 ) 50 1 " " 43 가

1 3 가 가 , 「 」 58 가 가

1 가 , , 가 가

[ : 2012.5.1] 46

47 ( 가 가 ) 50 가 가  
 가 . 가 가 .  
 가

1. ,
- 2.
- 3.
- 4.
- 5.

2 가 .

[ : 2012.5.1] 47

48 ( ) 51 ( " " )  
 ( )

1. 가
2. 가
3. 가 (
4. 가 가 )

.<

2010.7.12>

[ : 2012.5.1] 48

4

49 ( ) 53

- 1.
2. 가 가

[ : 2012.5.1] 49

50 ( )  
 . < 2010.7.12 >  
 1 가 ,

[ : 2012.5.1] 50

51 ( ) 55 " "  
 2 .

[ : 2012.5.1] 51

52 ( ) 56 1 " "  
 . < 2010.7.12 >

1.

가

2.

[ : 2012.5.1] 52

5

53 ( ) 57 2

6

. < 2010.7.12 >

6

가

, 13

가

1

1

,

가

1

- 1. 5
- 2. 8
- 3. 13

가  
가  
가

3  
2  
1

6

가

가

가

2

1.

:

2.

:

( 가 8 14  
100 22.2 )

57 3

"

"

6 1

3

57 5

[ : 2012.5.1] 53

54 ( ) 57 4

100 2

[ : 2012.5.1] 54

55 ( ) 59 3

( " "

)

< 2010.11.15 >

1.

7 4 , 9 15 12 15 6 1 3 , 2 5 , 3 3 , 5 8 ,  
가

2. 6 6 5 , 7 14 , 8 2 , 9 17 ,  
 10 8 , 11 7 , 12 16 ( )가

3. 6 1 6 · 8 , 4 6 , 5 4 · 5 ,  
 6 6 · 7 , 7 7 · 11 , 8 4 · 6 · 7 , 9 11 · 13 , 10 10  
 · 13 · 14 , 11 9 · 10 , 12 9 · 10 · 12 · 14 , 13 8 · 11  
 ( )가

4. 11 2 2 1 7  
 가

5. 53 3 가 1 3  
 가  
 1 1

[ 2010.11.15]  
 [ : 2012.5.1] 55

56 ( ) 59  
 2 1 . < 2010.11.15 >  
 1 가 ( ) 2  
 1 . < 2010.11.15 >  
 1 2 117 1 2  
 . < 2010.11.15 >  
 59 1  
 . < 2010.7.12, 2010.11.15 >

( ) ,  
 91 6 1 ) ,  
 30 . < 2010.11.15 >  
 [ 2010.11.15]  
 [ : 2012.5.1] 56

57 ( ) 59  
 56 5 . <  
 2010.11.15 >  
 59

1. 가 :  
 2. 가 ( 8 14 ) :  
 가

1 57 4 .  
 [ 2010.11.15]

[ : 2012.5.1] 57

58 ( )

1. 가 :

2. 가 ( 8 14 ):  
가

가

1. :

2. :

( ) 22  
57 4

[ : 2012.5.1] 58

6

59 ( ) 61 1

7

1

「 」 3

3 2

.< 2010.7.12>

1

가

가

, 3

가 51

.< 2010.7.12>

[ : 2012.5.1] 59

7

60 ( )

가 2

1

1

[ : 2012.5.1] 60

61 ( ) 63 1 " .

" 가  
1. 「 」

2. . . ,

3. 1 2 가

[ : 2012.5.1] 61

62 ( ) 64 2 가 .

64 3 가 3 ( 가 )

, 62 2 3  
62 2 3 가

2 .

[ : 2012.5.1] 62

63 ( ) 가 .

가 .

1. 가

2. 62 3 가

3. 가 64 1

4. 가

[ : 2012.5.1] 63

8

64 ( ) 66 69 .

(廢疾)

가 2 .

[ : 2012.5.1] 64

65 ( ) 66 69 .

8 .

" , " " " " , 6 4 53 2 " " "  
14



가

[ : 2012.5.1] 65

9

66 ( . ) 71 2

1. : 1 90 + 36 7  
30

2. : 1 90 + 36 7  
30

10

1 1 12 31

[ : 2012.5.1] 66

10

67 ( )

가

가,

1

가

[ : 2012.5.1] 67

68 ( ) 72 1 1 ( " " )

.< 2010.3.26, 2010.7.12, 2010.11.15 >

1. 가. 1 12 가

1 12

2. 60

3.

4.

5. 67 1

1 3

가

1

가

「

」

.< 2010.3.26 >

72 1 2

( " " )

1 1

.< 2010.3.26 >

[ : 2012.5.1] 68

69 ( ) 73 2 " " . < 2010.8.25 >

1. 「 」 11 12

2. 「 」 29

3. 「 」 11 2, 12 , 15 17

4. 가

5. [ : 2012.5.1 ] 69

70 ( ) 75 2 가

6 가 6 . < 2010.3.26 >

75 3 가

. < 2010.3.26 >

1. 6

2. 6 가

6

1 2 ,

. < 2010.3.26 >

[ : 2012.5.1 ] 70

71 ( ) 75 4 " " 가 . < 2010.3.26 >

1. 「 」 23 • 27 • 32

2. 「 」 30

3. 「 」 20 1

4. .

5. <2010.3.26 >

75 5 " 「 」 28

" 가 . <

2010.3.26 >

1. 「 」 28 가 (

2. 가 3 6

「 」

[ : 2012.5.1 ] 71

72 ( ) 76 2 " 100 2  
 " . < 2010.3.26 >  
 [ : 2012.5.1 ] 72

73 ( ) 78 1 " 11 2 1 3  
 " 6 1 3 . < 2010.11.15 >  
 78 1 " 30 9  
 11 가  
 57 ( . < 2010.11.15 >  
 2 가 60 . <  
 2010.11.15 >  
 [ : 2012.5.1 ] 73

74 ( ) 79 1 " " 30 ( 30 10  
 ) 11 가  
 62 .  
 1 가 73 3 " " "  
 " .  
 [ : 2012.5.1 ] 74

75 ( ) 가 78 3 79 2  
 1 4 .  
 1 .  
 [ : 2012.5.1 ] 75

76 ( ) 80 3 " ( )  
 " 가 , ,  
 1 , ,  
 54 2 56 2 )  
 1 . < 2010.11.15 >  
 [ : 2012.5.1 ] 76

77 ( ) 81  
 65 1 • 2 4 .  
 [ : 2012.5.1 ] 77

78 ( ) 가 83 1 1  
 가 20 ( 가  
 20 ) 가 83 1 2

.< 2010.11.15>

1. 가
2. 가

[ : 2012.5.1] 78

79 ( ) 84  
 1 30

[ : 2012.5.1] 79

80 ( ) 86  
 .< 2010.7.12>

1. 84 1 ( 75  
 )가 10 1 . ,  
 가 10 1
2. 84 1 가 가 가  
 가 ( 가 가 89  
 )
3. 84 2 가
4. 84 3 가  
 1 , 가 ,  
 , 가 ,

[ : 2012.5.1] 80

81 ( 3 ) 가 3  
 87 2  
 76

[ : 2012.5.1] 81

82 ( ) 89 가 ( 2 5  
 )가  
 1 가 가 가

가 가 89

[ : 2012.5.1] 82

83 ( )

[ : 2012.5.1] 83

3 2

< 2010.11.15 >

83 2( ) 91 8 1 2

11 2

91 8 3

11 3

[ 2010.11.15]

[ : 2012.5.1] 83 2

83 3( ) 91 10

[ 2010.11.15]

[ : 2012.5.1] 83 3

4

84 ( ) 93 1 "

"

1. 가 41 1 30

2. 가

[ : 2012.5.1] 84

85 ( ) 93 2

1

[ : 2012.5.1] 85

5

85 2( ) 96 1 7 「 」

12 ( " " ) ( " " )

[ 2010.9.29]

[ : 2012.5.1] 85 2

85 3( )

1. 4 1 2 ( " " )

2. ( )

3.

1

1

(分期) 10

[ 2010.9.29]

[ : 2012.5.1] 85 3

85 4( 가 ) 85 3 1

가

1

가

85 3 1

85

3 1

[ 2010.9.29]

[ : 2012.5.1] 85 4

86 ( ) 97 2 5 " " .<

2008.7.29>

1.

2. 「 」 4

3. 95 ( " " )

97 3 " " 「 」

1

1

.< 2010.7.12>

[ : 2012.5.1] 86

87 ( ) .< 2010.7.12>

[ : 2012.5.1] 87

88 ( )

.< 2010.7.12>

[ : 2012.5.1] 88

89 ( ) 98

- 1.
- 2.
- 3.
- 4.
- 5.

[ : 2012.5.1] 89

90 ( ) 99 3

1 1 12 31

12 31

[ : 2012.5.1] 90

91 ( )

. < 2010.7.12 >

「 」

97 5

2009.1.14, 2010.7.12 >

1 2

. < 2010.7.12 >

[ : 2012.5.1] 91

92 ( )

. < 2010.7.12 >

1

[ : 2012.5.1] 92

93 ( )

, 「 」

가

[ : 2012.5.1] 93

94 ( )

」 24

[ : 2012.5.1] 94

95 ( )

2

. < 2010.7.12 >

- 1.
- 2.
- 3.
- 4.
- 5.

[ : 2012.5.1] 95

6

96 ( ) 103 ( " "

- 1. ( " )
- 2. 103 1 ( " " )
- 3.
- 4.
- 5.

가 ( 103 1 2 3 ) 1

- 1.
- 2.

1 2

[ : 2012.5.1] 96

97 ( ) 가 103 3  
(補正) 2

가

2

[ : 2012.5.1] 97

98 ( ) 가

1

2

- 1.
- 2.
- 3.
- 4.

[ : 2012.5.1] 98



99 ( ) 104 1 ( " ) 1 90 , 2 . <

2010.3.26>

- 1. . . 5
- 2. 「 」 2
- 3. 10
- 4.

5 2 2 가 가

3 , , 가 가

[ : 2012.5.1] 99

100 ( ) , . ,

6

2

4

110

" " "

[ : 2012.5.1] 100

101 ( ) 105 1

1

- 1.
- 2. ( . )
- 3. ( 96 3 )
- 4. 가
- 5.
- 6.
- 7.
- 8.

1

[ : 2012.5.1] 101

- 102 ( ) 105 2 " " 가  
 . < 2010.7.12, 2010.11.15 >  
 1. 38 가  
 2.  
 3.  
 4. 97 1  
 5. ( 40 2 )  
 가  
 6.  
 1 1  
 가

[ : 2012.5.1] 102

- 103 ( ) 105 4  
 .  
 1.  
 2.  
 3. ( 105 4 1 )  
 4. ( 105 4 2 )  
 )  
 5. ( 105 4 3 )  
 6. , , , ,  
 ( 105 4 4 )  
 7. ( 105 4 5 )  
 105 4  
 105 4 1  
 .  
 1.  
 2.  
 3.  
 4.

[ : 2012.5.1] 103

- 104 ( ) 105 4 1 3  
 . < 2010.7.12 >

[ : 2012.5.1] 104

- 105 ( ) 106  
 1. ( )  
 2.  
 3. ( 106 3 )

4.

5.

96 2 4 " " "

[ : 2012.5.1] 105

106 ( ) 107 ( " ) 2 가

[ : 2012.5.1] 106

107 ( ) 5 (口頭),

9 5 107 5 2 .< 2010.3.26>

3 3 1

[ : 2012.5.1] 107

108 ( ) 5

1

[ : 2012.5.1] 108

109 ( )

1

[ : 2012.5.1] 109

110 ( )

- 1.
- 2.
- 3.
- 4.
- 5.

6.

1

1

3

[ : 2012.5.1] 110

111 ( )

5

1.

2.

3.

107

1

2

4

5

[ : 2012.5.1] 111

112 ( )

5

.<

2010.7.12>

.< 2010.7.12>

[ : 2012.5.1] 112

113 ( )

97

98

101

103

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3

" "

4

" "

" "

[ : 2012.5.1] 113

7

114 ( )

114

2

1.

가

「 」

2.

가 3

3.

가

4.

114

3

"

"

.<

2010.11.15>

1.

가

2. 가

[ : 2012.5.1] 114

115 ( ) 115 2 " " . <

3 5 . <  
2010.11.15>

1.

2. (國籍)

3. ( )

4.

5. ( 가 63 1 4 )

[ : 2012.5.1] 115

116 ( . ) 114 118

[ : 2012.5.1] 116

117 ( ) 119

1.

2.

3.

4.

1

2

1 3

가 가 , 가

119

[ : 2012.5.1] 117

118 ( ) 119 ( " " ) . < 2010.3.26, 2010.11.15>

1. 43 1 1

2. 43 1 2

3. 1 2 「 」 3 3

,  
2

117 1 2

가

117 1

[ : 2012.5.1] 118

119 ( ) 120 1

120

1

< 2010.11.15 >

1

[ : 2012.5.1 ] 119

120 ( )

[ : 2012.5.1 ] 120

121 ( ) 123

21 85 , 96 98 , 101 105 113 120

[ : 2012.5.1 ] 121

122 ( ) 124 1 " ( )

< 2009.6.30, 2011.12.30 >

1. 가 50

2. , 125 1

125 2 · 5 · 6

가. 「 」

. 「 」

. 「 」

. 「 」 22 ( " " )

)

1) [ (集貨) ·

]

2)

1 1 가 · 가 50

50

1 2 가 50 1 1

가

[ : 2012.5.1 ] 122

123 ( ) 124 2

27 , 28 , 30 34 36 " "

" " " " , 27 " " "

< 2010.11.15 >

[ : 2012.5.1 ] 123

124 ( ) 124 4 가

36 1

[ : 2012.5.1] 124

125 ( ) 125 1 " . < 2011.12.30 >

1.

가. 「 」 83 1 1

. <2011.1.24 >

. 「 」

. 「 」

2. 「 」 3 1

3.

4. 「 」 19

5.

)

6.

[ : 2012.5.1] 125

126 ( ) 125 3 가 15

1.

2.

3.

1

[ : 2012.5.1] 126

127 ( ) " " " " . 27 36

[ : 2012.5.1] 127

127 2( ) 가 ( 19 「 」 23

18 2 , 19 1 4

가

1. 31

2. 36

3. 92 . ,

4. 103

5. 106

[ 2011.12.30]

8

128 ( ) 12 . ,  
 ,가 129 1 2 가  
 . < 2010.7.12 >  
 [ : 2012.5.1] 128

< 20875 ,2008.6.25 >

- 1 ( ) 2008 7 1 .
- 2 ( ) 22 2 가
- 3 ( 가 ) 23 24  
가
- 4 ( ) 25
- 5 ( ) 39 5
- 6 ( ) 40 41
- 7 ( ) 53 6  
가
- 8 ( ) 59 7 가
- 9 ( ) 73 3 74 2  
가
- 10 ( ) 84
- 11 ( )  
가 53 1
- 가 53 4 가 53 1 6
- 12 ( ) 59  
1



13 ( )

70 71

14 ( )

71 2 “ ㄱ 」 37 ” “ ㄱ 」 40 ” .

2 10 “ 35 2 가

78 2 ” “ ㄱ 」 33 1

92 2 ” .

10 3 3

3. ㄱ 」 53 1 6

5 “ ㄱ 」 38 6 ” “ ㄱ 」 36 7

8 ” .

32 3 1 “ ㄱ 」 31 3 1 ” “ ㄱ

」 59 1 ” .

41 4 5 “ ㄱ 」 40 2 ” “ ㄱ 」

57 2 ” , “ 43 2 ” “ 62 2 ” , “ ㄱ

」 37 ” “ ㄱ 」 40 ” .

27 “ ㄱ 」 31 ” “ ㄱ 」 53

” .

23 3 “ ㄱ 」 35 ” “ ㄱ 」

33 ” .

22 “ ㄱ 」 31 2 ” “ ㄱ 」

53 6” .

3 2 “ ㄱ 」 6 8 10 12 ” “ ㄱ

」 5 7 9 11 ” , “

6 1 ” “ 5 1 ” , “ 7 2 ” “

6 2 ” , “ 11 “ ” “ 3  
” , “ ” ” “ 10

22 “ Γ 」 83 1 2 • 2 , 84 , 85 , 86 ,  
88 92 ” “ Γ 」 86 1 2 , 2 , 87  
89 , 91 95 ” , “ ” “  
” ” “ “ ” ” , “ 85 2 88

2 ” “ 88 2 91 2 ” , “ 83  
” “ 95 ” .  
22 2 “ Γ 」 84 ” “ Γ 」 99

24 2 12 “ Γ 」 85 1 ” “ Γ  
」 88 1 ” .

10 3 3 .  
3. Γ 」 53 1 6  
15 ( ) Γ 」

< 20947 ,2008.7.29>

1 ( ) 2009 2 4 . < >  
2 25

26 ( ) <62>

<63>

86 1 2 ” Γ 」 2 1 가 ” ” Γ  
」 4 ” .

<64> <113>

27 28

< 20966 ,2008.8.7>

1 ( ) 2009 1 1 .

2 ( ) 2 1 3

< 21263 ,2009.1.14>

1 ( )

2 ( )

91 2 " 「 」 " " 「 」  
"

< 21588 ,2009.6.30>

2009 7 1

< 22060 ,2010.2.24>

1 ( ) 2010 4 10

2 ( )

, 3 , 4 8

3 , 4 8

3 ( ) 「 」 6

8 2

< 22101 ,2010.3.26>

1 ( ) 2010 4 28 , 2 2 2 2010 3 31

2 ( ) 68 1 1 가 10 12

10 12

68 1 1

< 22269 ,2010.7.12>

1 ( ) . < >

2 ( ) <77>

<78>

3 5 , 4 , 7 2 , 8 2 2 , 9 2 , 12 , 14 1  
3 , 15 , 16 , 17 1 • 2 , 20  
, 24 1 , 25 4 , 59 3 , 86 2 , 87 , 88 2 ,  
91 1 • 2 • 3 , 92 1 , 95 , 112 1 , 128  
3 1 • 2 " " " " .  
4 3 가 6 2 " " " " .  
4 3 8 4 1 • 5 1 • 6 1 " " " " .  
35 1 , 48 2 , 50 1 , 52 2 , 53 1 , 56 4 , 59 6 , 68 1  
3 , 80 1 1 • 102 1 2 , 104 112 2 " " "  
"

<79> <136>

< 22356 ,2010.8.25>

1 ( ) 2010 9 1 .

2

3 ( )

69 3 "ㄱ" 」 12 15 , 18 21 " "ㄱ  
」 11 2, 12 , 15 17 "

4

< 22410 ,2010.9.29>

2011 1 1 .

< 22492 ,2010.11.15>

1 ( ) 2010 11 21 .

2 ( ) 25 2 1

3 ( ) 83 2, 11 2 11 3  
가 .

< 22493 ,2010.11.15>

1 ( ) 2010 11 18 .

2 3

4 ( ) <59>

<60>

86 2 93 2 " " " "

<61> <115>

5

< 22516 ,2010.12.7>

1 ( ) 2010 12 9 .

2 6

7 ( )

1 52 " Γ 」 21 " " Γ 」 22 " .

8

< 22637 ,2011.1.24>

1 ( ) 2011 1 24 . < >

2 21

22 ( )

125 1 .

23

< 23468 ,2011.12.30>

2012 5 1 . , 127 2 .

## [별표 1] &lt;개정 2010.12.7&gt;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의 업무	공단 업무의 근거조항
1.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승인, 보험계약 해지의 승인 및 보험관계의 소멸에 관한 업무 2.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적용의 승인 및 일괄적용 해지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에 관한 업무 4.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업무 5. 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에 관한 업무 6.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에 관한 업무 7.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8. 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에 관한 업무 9.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10. 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 11.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업무 12. 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총당과 반환에 관한 업무 13. 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총당에 관한 업무 14.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2호

<p>15.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p> <p>16.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p> <p>17.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에 관한 업무</p> <p>18.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p> <p>19.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업무</p> <p>20.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p> <p>21.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업무</p> <p>22.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p> <p>23.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업무</p> <p>24. 보험료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p> <p>25.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보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인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업무</p> <p>26. 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에 관한 업무</p> <p>27.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p> <p>28. 보험료징수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같은 법 제49조의 2·제49조의3에 따른 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중소기업사업주·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에 관한 업무</p>	
<p>29.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p> <p>30.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의 추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생존확인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p> <p>31. 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지정취소</p>	<p>법 제11조제1항제3호</p>
<p>로자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업</p>	

<p>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업무</p> <p>32. 법 제4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p> <p>33. 법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p> <p>34. 법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업무</p> <p>35. 법 제47조에 따른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에 관한 업무</p> <p>36. 법 제48조에 따른 전원 요양에 관한 업무</p> <p>37.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등급등의 재판정에 관한 업무</p> <p>38. 법 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직업훈련 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p> <p>39.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업무</p> <p>40.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에 관한 업무</p> <p>41. 법 제78조에 따른 장애특별급여의 지급 및 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p> <p>42.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및 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p> <p>43.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업무</p> <p>44.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업무</p> <p>45. 법 제8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당에 관한 업무</p> <p>46.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p> <p>47. 법 제90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p> <p>47의2. 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의 진단에 관한 업무</p> <p>47의3.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른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p> <p>48. 법 제9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및 대부금의 총당에 관한 업무</p> <p>49.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요구에 관한 업무</p> <p>50. 법 제120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관한 업무</p>	
<p>51.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업무</p>	<p>법 제11조제1항제7호</p>
<p>52.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중 근</p>	



##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frac{\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비자물가변동률} = \frac{\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12}$$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3.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요인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 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백내장 등의 안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

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 피부궤양 등의 방사선 피부장해, 백내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 방사선 폐렴,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조혈기(造血器)장해, 골괴사 또는 그 밖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 작업, 잠수함실의 내부나 높은 공중에서 종사하는 이유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해

- 1) 폐·중이(中耳)·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 3) 질소마취 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 6) 기흉·혈기흉·종격동(縱隔洞)·심낭 또는 피하기종
-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머티즘 관절,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카톤노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소음성 난청

###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 나. 난청의 측정방법

-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

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의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착암기·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팔목 등에 저림·통증·냉감(冷痺)·뻣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

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 1) 손가락·아래팔 등의 말초순환장애
- 2) 손가락·아래팔 등의 말초신경장애
- 3) 손가락·아래팔 등의 골·관절·근육·힘줄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나.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 질병

##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구리 등의 금속흡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 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광물유·윗·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蜂窩織炎)·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등으로 인한 원발성(原發性) 상피암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 2) 지골단 용해증
- 3) 경피증
- 4) 레이노 현상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원발성 간혈관육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중추신경계장해
- 2) 급성 호흡부전

####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 외의 원인으로 인한 피부 질환 및 안과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접촉피부염
- 2) 광과민 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
- 3) 피부색소 이상
- 4) 타르에 의한 염소 여드름
- 5)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 7)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원발성 폐암



2) 원발성 피부암(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애, 일산화탄소중독 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율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망간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
- 2) 파킨슨증후군
- 3) 근이긴장증(筋異緊張症)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1.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신근마비
- 2) 빈혈. 다만, 철분결핍성 빈혈은 제외한다.
- 3) 만성신부전증
- 4)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ml) 중 40마이크로그램( $\mu\text{g}$ )

이상 검출되고 납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 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 복부 산통(痙痛),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2.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국소 또는 전신의 진전(振顫), 보행장애, 말하는 기능의 장애 등 신경계 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 중독, 망간 중독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정신신경질환은 제외한다.
- 2) 폐양성 구내염, 과도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의 구강내 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 3) 안과용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전방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 4) 단백뇨 등 신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장(腎臟)증상이나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

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증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에 따른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비중격(鼻中隔) 궤양 및 천공(穿孔), 크롬으로 인한 기관지천식 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 2)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 3) 결막염·결막궤양 등의 안장해
-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 5) 원발성 폐암
- 6)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 암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급성 호흡기질환
-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세뇨관성 신장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 2) 폐기종
-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 2) 급성 위장관계질환

####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 2)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백혈병
- 2)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 3) 다발성 골수종

#### 4) 재생불량성 빈혈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홍분상태·경련·섬망(譫妄)·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과 2)에 해당하는 질환은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 질환, 급성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 1) 접촉피부염
-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 4) 삼차(三叉)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애,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다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 등)에 노출되는 업무[도장(塗裝) 작업, 가구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인조가죽 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內因性) 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外因性)천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안질환

다. 기관지천식, 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 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 질환

라. 다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E(Specific I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로 하는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19. 이황화탄소( $CS_2$ )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간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3) 2)의 증상 또는 소견 중 어느 하나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 장해, 생식기계 장해, 감각신경성난청, 고혈압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나.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이나 2)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 21.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



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걸린 경우
-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 1)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 2) 옥외노동으로 인한 찌꺼기무시병
- 3)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농마,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丹毒), 브루셀라증
- 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22.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 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 작업으로 인한 땀띠

다. 한랭 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凍瘡)·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인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및 광선각화증

-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성·만성 방사선피부염
-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 사.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로 인한 백반증
-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적 화상
- 카. 그 밖에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23.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경우
-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 나)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 근거가 없을 것
  - 다)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 라) 해당 병원체로 하는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별표 4] [중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나.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 외적인 사유에 따른 잦은 음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이나 그 밖의 검증되지 않은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6)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으로 인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한 간질환

[별표 5] <개정 2010.11.1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1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는 경우: 1.5배
  - 나. 6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는 경우: 2.0배
  - 다. 9개월 또는 10개월의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는 경우: 2.5배
  - 라. 11개월 또는 12개월의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는 경우: 3.0배
3. 법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 개시일 전 3년을 말한다) 동안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10.11.15>

장애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정도장애가 남은 사람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정도 장애가 남은 사람

####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



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정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정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사람

-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애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애 외의 장애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삭제 <2010.11.15>



[별표 8] <개정 2010.11.15>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

## [별표 9] &lt;개정 2010.11.15&gt;

## 장애등급 및 진폐장애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등급	노동력 상실률
제1급	100%
제2급	100%
제3급	100%

## [별표 10]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

구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0퍼센트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35퍼센트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30퍼센트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25퍼센트

비고: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별표 1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

취업가능 개월수	계수	취업가능 개월수	계수
1	0.9958	28	26.3766
2	1.9875	29	27.2630
3	2.9751	30	28.1457
4	3.9586	31	29.0247
5	4.9381	32	29.9002
6	5.9134	33	30.7719
7	6.8847	34	31.6401
8	7.8520	35	32.5047
9	8.8153	36	33.3657
10	9.7746	37	34.2231
11	10.7298	38	35.0769
12	11.6812	39	35.9272
13	12.6286	40	36.7740
14	13.5720	41	37.6172
15	14.5115	42	38.4570
16	15.4472	43	39.2933
17	16.3789	44	40.1261
18	17.3068	45	40.9554
19	18.2309	46	41.7814
20	19.1511	47	42.6038
21	20.0674	48	43.4229
22	20.9800	49	44.2386
23	21.8888	50	45.0509
24	22.7938	51	45.8598
25	23.6951	52	46.6653
26	24.5926	53	47.4676
27	25.4865	54	48.2665

55	49,0620	98	80,3228
56	49,8543	99	80,9854
57	50,6433	100	81,6452
58	51,4290	101	82,3023
59	52,2115	102	82,9566
60	52,9907	103	83,6082
61	53,7666	104	84,2572
62	54,5394	105	84,9034
63	55,3089	106	85,5469
64	56,0753	107	86,1878
65	56,8385	108	86,8261
66	57,5985	109	87,4616
67	58,3553	110	88,0946
68	59,1090	111	88,7249
69	59,8596	112	89,3526
70	60,6071	113	89,9777
71	61,3514	114	90,6002
72	62,0927	115	91,2201
73	62,8309	116	91,8374
74	63,5661	117	92,4522
75	64,2982	118	93,0644
76	65,0272	119	93,6741
77	65,7532	120	94,2813
78	66,4763	121	94,8859
79	67,1963	122	95,4881
80	67,9133	123	96,0877
81	68,6274	124	96,6849
82	69,3384	125	97,2795
83	70,0466	126	97,8717
84	70,7518	127	98,4615
85	71,4541	128	99,0488
86	72,1534	129	99,6336
87	72,8499	130	100,2161
88	73,5434	131	100,7961
89	74,2341	132	101,3737
90	74,9220	133	101,9489
91	75,6069	134	102,5217
92	76,2891	135	103,0922
93	76,9684	136	103,6603
94	77,6448	137	104,2260
95	78,3185	138	104,7894
96	78,9894	139	105,3504
97	79,6575	140	105,9091

141	106,4655	184	128,3281
142	107,0196	185	128,7914
143	107,5714	186	129,2529
144	108,1209	187	129,7124
145	108,6681	188	130,1700
146	109,2130	189	130,6258
147	109,7557	190	131,0796
148	110,2961	191	131,5315
149	110,8343	192	131,9816
150	111,3703	193	132,4298
151	111,9040	194	132,8762
152	112,4355	195	133,3207
153	112,9649	196	133,7633
154	113,4920	197	134,2041
155	114,0169	198	134,6431
156	114,5397	199	135,0803
157	115,0602	200	135,5156
158	115,5787	201	135,9492
159	116,0949	202	136,3809
160	116,6091	203	136,8109
161	117,1211	204	137,2391
162	117,6309	205	137,6655
163	118,1387	206	138,0901
164	118,6443	207	138,5129
165	119,1479	208	138,9340
166	119,6493	209	139,3534
167	120,1487	210	139,7710
168	120,6460	211	140,1869
169	121,1413	212	140,6011
170	121,6345	213	141,0135
171	122,1256	214	141,4243
172	122,6147	215	141,8333
173	123,1018	216	142,2406
174	123,5868	217	142,6463
175	124,0699	218	143,0502
176	124,5509	219	143,4525
177	125,0300	220	143,8531
178	125,5070	221	144,2521
179	125,9821	222	144,6493
180	126,4552	223	145,0450
181	126,9263	224	145,4390
182	127,3955	225	145,8314
183	127,8628	226	146,2221

227	146,6112	270	161,9010
228	146,9987	271	162,2251
229	147,3846	272	162,5478
230	147,7689	273	162,8692
231	148,1516	274	163,1892
232	148,5327	275	163,5080
233	148,9123	276	163,8253
234	149,2902	277	164,1414
235	149,6666	278	164,4562
236	150,0414	279	164,7696
237	150,4147	280	165,0818
238	150,7864	281	165,3927
239	151,1566	282	165,7022
240	151,5253	283	166,0105
241	151,8924	284	166,3175
242	152,2580	285	166,6233
243	152,6220	286	166,9277
244	152,9846	287	167,2310
245	153,3457	288	167,5329
246	153,7052	289	167,8336
247	154,0633	290	168,1330
248	154,4199	291	168,4312
249	154,7750	292	168,7282
250	155,1286	293	169,0239
251	155,4808	294	169,3184
252	155,8315	295	169,6117
253	156,1807	296	169,9038
254	156,5285	297	170,1947
255	156,8749	298	170,4843
256	157,2198	299	170,7727
257	157,5633	300	171,0600
258	157,9053	301	171,3461
259	158,2460	302	171,6309
260	158,5852	303	171,9146
261	158,9230	304	172,1971
262	159,2595	305	172,4785
263	159,5945	306	172,7586
264	159,9281	307	173,0376
265	160,2604	308	173,3155
266	160,5912	309	173,5922
267	160,9207	310	173,8677
268	161,2489	311	174,1422
269	161,5756	312	174,4154

313	174,6876	356	185,3806
314	174,9586	357	185,6073
315	175,2284	358	185,8330
316	175,4972	359	186,0577
317	175,7649	360	186,2816
318	176,0314	361	186,5045
319	176,2968	362	186,7264
320	176,5611	363	186,9475
321	176,8244	364	187,1676
322	177,0865	365	187,3836
323	177,3476	366	187,6052
324	177,6075	367	187,8226
325	177,8664	368	188,0391
326	178,1242	369	188,2547
327	178,3810	370	188,4694
328	178,6367	371	188,6832
329	178,8913	372	188,8961
330	179,1449	373	189,1082
331	179,3974	374	189,3194
332	179,6488	375	189,5296
333	179,8992	376	189,7391
334	180,1486	377	189,9476
335	180,3970	378	190,1553
336	180,6443	379	190,3621
337	180,8906	380	190,5681
338	181,1358	381	190,7732
339	181,3001	382	190,9775
340	181,6233	383	191,1809
341	181,8656	384	191,3834
342	182,1068	385	191,5852
343	182,3470	386	191,7861
344	182,5862	387	191,9861
345	182,8245	388	192,1854
346	183,0617	389	192,3838
347	183,2980	390	192,5813
348	183,5332	391	192,7781
349	183,7675	392	192,9740
350	184,0009	393	193,1692
351	184,2332	394	193,3635
352	184,4646	395	193,5570
353	184,6951	396	193,7497
354	184,9245	397	193,9416
355	185,1531	398	194,1327

399	194,3230	442	201,8014
400	194,5126	443	201,9599
401	194,7013	444	202,1177
402	194,8893	445	202,2749
403	195,0765	446	202,4314
404	195,2629	447	202,5873
405	195,4485	448	202,7426
406	195,6334	449	202,8972
407	195,8174	450	203,0511
408	196,0008	451	203,2044
409	196,1833	452	203,3571
410	196,3652	453	203,5091
411	196,5462	454	203,6606
412	196,7265	455	203,8113
413	196,9061	456	203,9615
414	197,0849	457	204,1110
415	197,2630	458	204,2600
416	197,4403	459	204,4083
417	197,6169	460	204,5559
418	197,7928	461	204,7030
419	197,9679	462	204,8495
420	198,1423	463	204,9953
421	198,3160	464	205,1406
422	198,4889	465	205,2852
423	198,6612	466	205,4293
424	198,8327	467	205,5727
425	199,0035	468	205,7156
426	199,1736	469	205,8578
427	199,3430	470	205,9995
428	199,5117	471	206,1406
429	199,6798	472	206,2811
430	199,8471	473	206,4210
431	200,0137	474	206,5603
432	200,1796	475	206,6991
433	200,3448	476	206,8372
434	200,5094	477	206,9748
435	200,6732	478	207,1119
436	200,8364	479	207,2483
437	200,9989	480	207,3842
438	201,1607	481	207,5196
439	201,3219	482	207,6543
440	201,4824	483	207,7886
441	201,6422	484	207,9222



485	208,0553	528	213,2854
486	208,1879	529	213,3962
487	208,3199	530	213,5066
488	208,4513	531	213,6165
489	208,5822	532	213,7260
490	208,7126	533	213,8350
491	208,8424	534	213,9436
492	208,9717	535	214,0517
493	209,1005	536	214,1594
494	209,2287	537	214,2666
495	209,3563	538	214,3734
496	209,4835	539	214,4797
497	209,6101	540	214,5856
498	209,7362	541	214,6911
499	209,8618	542	214,7961
500	209,9869	543	214,9007
501	210,1114	544	215,0048
502	210,2354	545	215,1085
503	210,3589	546	215,2118
504	210,4819	547	215,3147
505	210,6044	548	215,4171
506	210,7264	549	215,5191
507	210,8478	550	215,6207
508	210,9688	551	215,7218
509	211,0893	552	215,8226
510	211,2092	553	215,9229
511	211,3287	554	216,0228
512	211,4476	555	216,1223
513	211,5661	556	216,2214
514	211,6841	557	216,3200
515	211,8016	558	216,4183
516	211,9186	559	216,5161
517	212,0351	560	216,6136
518	212,1512	561	216,7106
519	212,2667	562	216,8073
520	212,3818	563	216,9035
521	212,4964	564	216,9993
522	212,6105	565	217,0948
523	212,7242	566	217,1898
524	212,8373	567	217,2845
525	212,9500	568	217,3787
526	213,0623	569	217,4726
527	213,1741	570	217,5661

571	217,6591	614	221,3168
572	217,7518	615	221,3943
573	217,8442	616	221,4716
574	217,9361	617	221,5484
575	218,0276	618	221,6250
576	218,1188	619	221,7012
577	218,2096	620	221,7772
578	218,3000	621	221,8528
579	218,3901	622	221,9281
580	218,4797	623	222,0031
581	218,5690	624	222,0777
582	218,6579	625	222,1521
583	218,7465	626	222,2262
584	218,8347	627	222,2999
585	218,9225	628	222,3734
586	219,0100	629	222,4465
587	219,0971	630	222,5193
588	219,1838	631	222,5919
589	219,2702	632	222,6641
590	219,3562	633	222,7360
591	219,4419	634	222,8077
592	219,5272	635	222,8790
593	219,6121	636	222,9500
594	219,6917	637	223,0208
595	219,7809	638	223,0912
596	219,8648	639	223,1614
597	219,9484	640	223,2313
598	220,0316	641	223,3009
599	220,1144	642	223,3701
600	220,1970	643	223,4392
601	220,2791	644	223,5079
602	220,3610	645	223,5763
603	220,4425	646	223,6444
604	220,5236	647	223,7123
605	220,6044	648	223,7799
606	220,6849	649	223,8472
607	220,7650	650	223,9142
608	220,8449	651	223,9810
609	220,9243	652	224,0474
610	221,0035	653	224,1136
611	221,0823	654	224,1795
612	221,1608	655	224,2452
613	221,2390	656	224,3106

657	224,3757	662	224,6971
658	224,4405	663	224,7606
659	224,5051	664	224,8239
660	224,5694	665	224,8868
661	224,6334	666	224,9496

비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별표 11의2] <개정 2010.11.15>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애(F<sub>3</sub>)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sub>1</sub>)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애(F<sub>2</sub>)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sub>1</sub>)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애(F<sub>1</sub>)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sub>1</sub>)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애(F<sub>1/2</sub>)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sub>1</sub>)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2. 진폐장애등급 기준

진폐장애 등급	구 분
제 1 급	진 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 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 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 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 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 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애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애(F3)로 확인된 경우
-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3] <신설 2010.11.15>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애등급 기준  
(제83조의2제2항 관련)

진폐장애등급	구 분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별표 12] &lt;개정 2010.3.26&gt;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 1. 공통기준

위반행위의 횟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그 이전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로 한다.

## 2.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근거 법령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9조 제1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법 제129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 제2항제1호	진료계획 미제출 1건당 5만원		
4. 법 제105조제4항(법 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9조 제2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 법 제114조제1항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29조 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6. 법 제117조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9조 제2항제4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7. 법 제125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 제2항제5호	미신고 1건당 5만원		